

구제역 특별방역 대책

농 립 부

I. 구제역 방역추진상황

구제역이란 ?

· 소, 돼지, 염소,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걸리는 급성전염병으로 걸린 동물과 접촉·오염된 사료나 물·공기 등을 통해 전파됨

-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아니함

· 감염시 열이 오르고 입·혀·발굽·젖꼭지에 물집이 생기며, 심하게 앓다가 죽게됨.

· 국제수역사무국(OIE)에서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국가간 동물이나 축산물 교역시 제일 중요하게 취급함

- 경기 파주·화성·용인, 충북 충주, 충남 홍성·보령
- 살처분등 : 182농가 2,216두 살처분 및 13농가 290두 특별수매
- 예방접종 : (1차) 13천농가 861천두, (2차) 13천농가 662천두

② 피해농가 지원 및 방역비용(3,006억원)

〈직접피해 : 568〉

- 살처분 가축, 오염사료 및 폐기 우유 시가 보상 : 319억원
- 소독약품, 예방접종실시 등 방역비 투자 : 249억원

〈농가지원 : 2,438〉

- 이동제한지역 가축 시가수매 : 444천두 2,180억원
-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: 1,186농가 258억원
- 수출증단에 따른 육가공 등 관련산업 간접 손실액은 미포함

① 국내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

- 발생일자 : '00.3.24 ~ 4.16
- 발생내역 : 6개 시·군 15농가 81두
(한우 62, 젖소 19)감염

③ 구제역 발생원인 추정

- 『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』의 중간조사 결과와 외국의 발생사례를 볼 때 작년도 발생은 중국, 러시아, 몽골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
- "해외 여행객", "수입건축" 또는 "황사·바람"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
- 구제역은 전파경로나 수단이 다양하여 정확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움
 - 과거 구제역 발생국인 영국, 덴마크, 대만, 일본 등 외국 의 경우도 아직까지 발생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

④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한 조건 및 시기

- 국제수역사무국(OIE)의 청정국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예방접종 중지('00.8.31) 상태에서 1년간 발생이 없어야 함.
 - 금년 8월까지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및 예찰·혈청검사·소독 등 방역 추진
-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OIE 『구제역 및 기타 질병위원회』에 방역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및 심의
 - 심의결과에 따라 '02. 5월 OIE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획득 예상

⑤ 재발방지대책 추진

- 예찰 및 혈청검사 확대, 일제소독,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 등 방역강화
 - 읍·면 단위별로 예찰의무요원(2,348명) 지정, 예찰
 - 발생지역을 가축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혈청검사
 - 구제역 병원체를 없애기 위한 [전국 일제 소독의 날] 운영
 - 예방접종 가축의 접종표시 및 도축(이동)사항 관리

-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방역조직간의 연계 제고(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: '01.1.26)
-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공·항만 검역강화

3~4월 재발가능요인

-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의 면역소실 (접종후 6개월)로 방어능력이 없어짐
- 해빙기 사람·차량 등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잠복된 병원체가 옮겨질 수 있음
 - 상대적으로 동절기에 축한, 대설로 소독·예찰 등 방역관리가 취약함
- 기상관측상 황사집중 발생시기임
 - '97. 3 대만, '00.3 : 일본·한국 발생

II. 구제역 특별대책 추진

1. 추진 배경

① 우리나라의 지리적·계절적 여건상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있음

- 소독·혈청검사 등 지속실시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없어진 것으로 추정
- 황사(몽골 구제역 발생), 혹한과 대설,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등으로 해빙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
②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 소홀로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이 미흡

- 자치단체장의 방역위반농가 등에 대한 적발 및 처분이 취약
- 한우·사슴·염소 등 소규모 사육농가의 방역관리 소홀

2. 그동안 추진상황

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

- 2월부터 4월까지 월 2회(1일·15일), 5월부터는 매월 15일 실시
- 2~3개 마을단위별 「공동방재단」 10,269개소 편성 및 운영
- 수의과학검역원 및 축산기술연구소 현지 점검반(45개) 운영

②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실시

- 2.1일부터 검역원 인력(70명)을 동원, 일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대상 정비로 가축 출하(매매)시 미신고 농가 구제조치(2월까지)
- 3월부터 신고하지 않고 도축(판매)한 농가는 사법 기관 고발조치
- 2.17 현재 예방접종 가축(66만두)중 잔류두수는 124천두 정도로 집계
- 3월까지 염소, 사슴, 돼지의 자가소비도축 특별조치로 조기 도태 유도

· 돼지를 제외한 접종가축의 "낙인표시"를 "목걸이"로 대체(32천두)

③ 소, 돼지, 사슴, 염소 대상 전국적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 실시

- 작년도 6,366농가 29,904두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(계획 27,500두)
- 예찰의무요원(연 50,633명)의 313천 농가 질병예찰 결과 이상없음

④ 공·항만 불법 반입 육류, 수입건초, 선박·항공기의 남은 음식물, 수입건초 등 검역·검사 및 홍보·교육강화

- 휴대육류 4,393건, 27톤 폐기처리 및 밀수 등 단속
- 리후렛, 비디오, 언론 등 반복 홍보외 1월부터 기상청과 협의 "황사에보제" 운영 및 "축산 농가 관리수칙" 제작·배포(40만부)

3.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방안

특별 대책 추진 방향

◆ 추진기간 : 01. 2. 24~4. 30(2개월간)

◆ 중점관리 목표 및 추진 개요

- 대책기간중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에 총력
 - 농가 소독, 항사대책, 해외 여행객 검사 등 강화로 재발요인 차단
 - 중앙부처 및 발생지역 자치단체장 "특별대책협의회" 설치·운영
- 방역추진이 미흡한 농가·지자체·기관 등 현지점검 및 처분 강화
- 구제역 발생대비 가상훈련(CPX) 실시
- 중앙·지자체별 "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" 운영 강화

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중 "공동 방제단운영", "공·항만 검역·검사 강화" 및 "예방접종 가축사후관리" 부분을 중점 추진

· 시·도 농업기술원(8개반, 24명), 검역원·축산기술연구소·농협(5개반, 15명)
· 농림부·검역원(19개반, 38명) :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

② 구제역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특별대책협의회 설치 및 회의 개최

④ 구제역 발생대비 가상훈련(CPX) 실시

<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>

- 위원장 : 농림부장관,
- 위 원 : 관계부처 차관·청장 및 부지사 11명
- 일 시 : '01.2.24(토) 09:00
- 장 소 : 농림부장관실

< 구제역 실무대책반 >

- 반 장 : 농림부 차관보,
- 위 원 : 관계부처 국장, 구제역 발생지역 부단체장, 축산단체장 등 22명
- 일 시 : '01.2.27(화) 14:00
- 장 소 : 농림부 대회의실

- 일 시 : '01. 3. 9(금) 10:00~16:00
- 장 소 : 강원도 원주시
- 내 용 : 발생신고 단계부터 살처분·이동통제소 운영·혈청검사, 도축처리 등 종식 단계까지 가상상황 전개·훈련

⑤ "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" 운영 강화 및 농가 등 신고전화 설치

- 농림부·검역원·발생도는 현 "구제역대책 상황실" 보강운영(8월말까지)
- 기타 시도는 축산 담당과에 신규 설치·운영(4월말까지)
- 시·도(시·군) 및 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발생 전용 신고전화 설치
- 기 설치한 경기도 신고전화(1588-4060)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

③ 특별대책 추진점검반 편성·운영

▶ 중앙부처 합동 점검반

- 국무총리실·농림부(5개반 10명) : 공·항만, 해양경찰서 등 대상
- 행정부·농림부(5개반 10명) : 시·도, 시·군청 대상

▶ 농림부·소속기관 합동 점검반(농가·가축 시장·도축장 소독실태)

- 구제역 발생신고 포상금 확대 (20만원 → 50만원/건당)

⑥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중 농업 관련단체 현장지원 확대

- 기존 방역추진기관·단체외 농업기반공사·농수산물유통공사의 "전국 일제소독의 날" 소독장비, 차량 등 지원 및 농가 홍보 협조

㉓ 양축농가 및 대국민 홍보강화

- 기존 홍보의 행정자치부 협조, 반상회보에 구제역 홍보내용 게재
- 행자부장관 "구제역 특별방역 합동담화문" 발표

- 대책기간중 반상회 회보에 구제역 특별대책 내용 게재
- 강원도 구제역 가상훈련(CPX)시 행자부 행정지원 및 행사 참관
 - 경찰의 가축 및 차량 이동통제, 주민홍보, 담당관 격려 등
- 시·도, 시·군 가축방역 조직 및 인력 보강 협조
 -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보직관리

4. 부처별 주요 협조사항

〈 공통사항 〉




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부처별 역할분담 추진

- 공·항만 홍보, 밀수·휴대육류 등 검색, 밀입국자 관리, 항공기·선박의 남은 음식물 처리 등
- 총리실·행자부 특별점검반 편성 및 현지 점검 인력 차출
- 세관, 해경초소,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추진 실태 점검 협조

- 각 시·도, 시·군 "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" 운영강화 및 "공동방재단" 운영지원 및 감독 철저(시·도)
- 예방접종 가축의 불법 출하농가·매매 중간상 단속(경찰청)

②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제 홍보 및 여행객의 입국시 소독협조(건교부)

③ 황사발생 예상시 기상예보관의 일기예보에 황사주의 멘트(기상청)

- 기상예보관의 황사주의 멘트가 어려울 경우 자막처리 협조
-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황사발생 정보의 적기제공
- 휴대·밀반입 육류 등 검색강화(관세청)
 - 관계부처(청)의 세부 협조사항 : "별첨"   

〈 부처별 협조사항 〉

① 구제역 특별방역 합동담화문발표 및 반상회 홍보 등(행자부)

- 합동담화문 초안 작성(농림부) 및 공공기관 등 게시

관계부처 (청 세부 협조사항)

부 처 별	협 조 사 항
국무총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·항만(CIQ), 해양경찰서 등의 합동점검 실시 협조 - 점검인력 차출 및 점검 실시 - 점검대상 기관별 점검표는 농림부에서 작성
행정자치부 (시·도) (경찰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·도의 구제역 재발방지 특별 대책 추진 협조 - 「공동방재단」 운영지원 및 소독강화, 질병예방, 접촉가축관리 -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의 현지농장 방문금지 홍보 · 예방접종 가축 불법 출하농가·매매 중간상 단속 - 불법 반입된 육류의 유통감시 및 단속 협조 · 시·도, 시·군의 방역조직 및 인력보강 협조
건설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제역 방역을 위한 산하기관·단체 등에 홍보 협조 - 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방역을 위한 공항 구제역송, 홍보물 부착, 전광판 안내, 기내방송, 설문서 조사 등 요청시 협조 ·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하다 남은 음식물류 안전처리 협조
해양경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상을 통한 육류의 밀수단속 강화 - 쇠고기, 돼지고기, 염소고기 등 육류·육가공품 및 부산물(뼈, 족발 등의) 검색 - 외항선박 검문·검색강화 및 서해지역 출어 선원 홍보·교육 - 밀수입 동물 및 육류 발견시 관할서관 및 수의과학검역원에 인계 - 긴급피해 피항 선박 검사강화 · 외항선박에서 사용하다 남은 음식물류 안전처리 협조
관 세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세청 출장소·감시소의 육류 불법반입 감시강화 - 쇠고기, 돼지고기, 염소고기 및 관련 부산물 등의 불법반입 방지 · 수입 건초류 보세창고 관리 강화 및 검역협조 · 외항선박·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안전처리 협조
기 상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황사발생 예상시 기상예보관의 일기에보에 황사주의 멘트 - 황사주의 멘트가 어려울 경우 자막처리 협조 - 수의과학검역원에 황사발생 정보 적기제공
농촌진흥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·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의 예찰 및 소독지원 - 시·도 농업기술원의 타·시도 축산농가 소독상태 점검 · 축산기술연구소 현지점검반 출장지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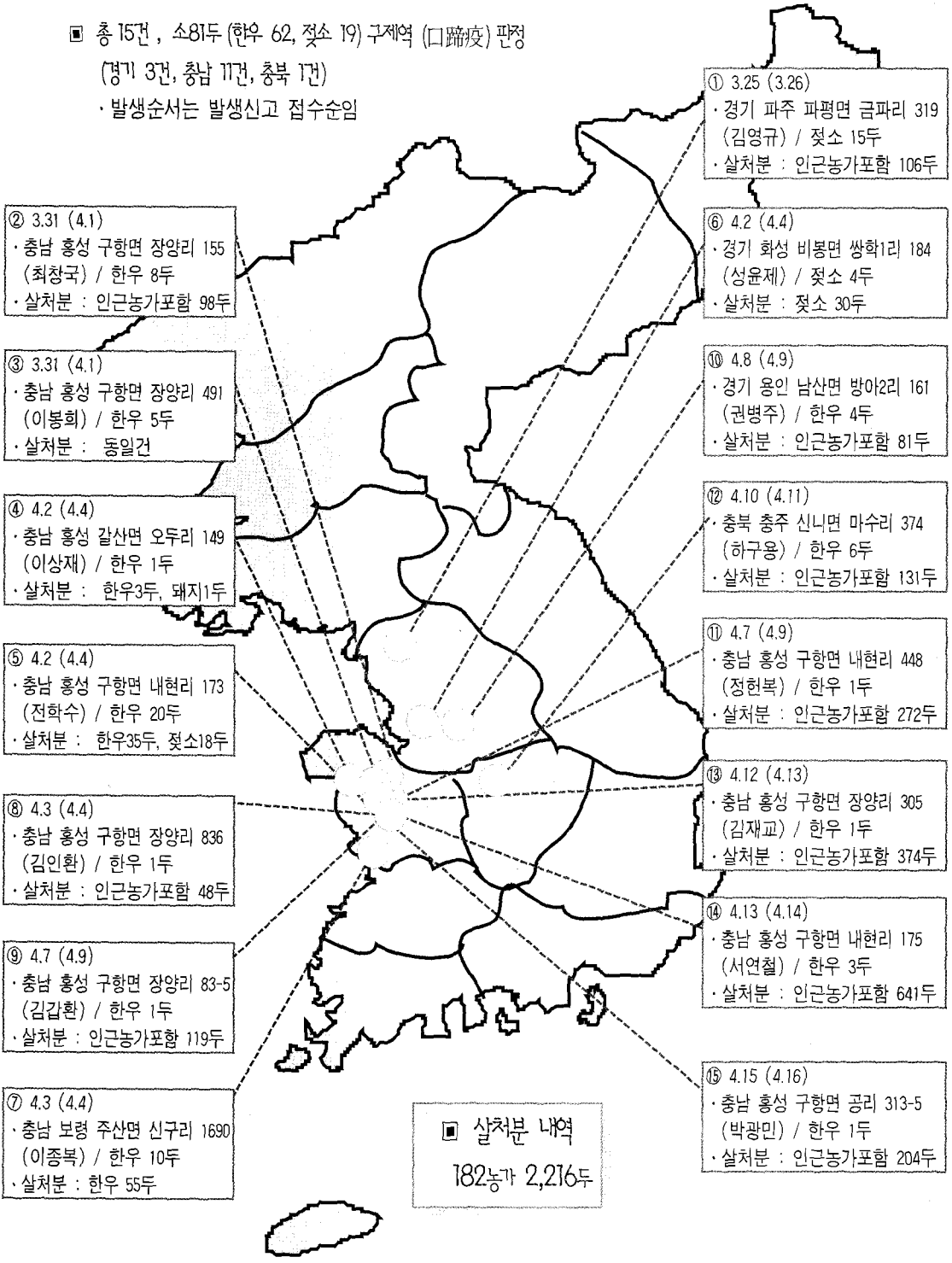
[별첨 2]

구제역 특별대책 협의회 위원 명단

구 분		성 명	전 화 번 호	비 고
농 립 부	장 관	한 갑 수	500-1501	위 원 장
농 립 부	차 관	김 동 근	500-1503	부 위원 장
국무총리실	경제조정관	맹 정 주	3703-2121	위 원
행정자치부	차 관	김 재 영	3703-4010	
건설교통부	차 관	강 길 부	500-4002	
해양경찰청	청 장	이 규 식	032-888-1335	
관세청	청 장	김 호 식	042-481-7600	
기상청	청 장	안 명 환	832-8604/5	
농촌진흥청	청 장	이 은 종	031-299-2210	
경기도	부지사	백 성 운	031-249-2011	
충청북도	행정부지사	유 의 재	043-220-2010	
충청남도	행정부지사	권 오 룡	042-251-2010	

구제역 국내 발생현황

■ 총 15건, 소81두 (한우 62, 젖소 19) 구제역 (口蹄疫) 판정
 (경기 3건, 충남 11건, 충북 1건)
 · 발생순서는 발생신고 접수순임



■ 살처분 내역
 182농가 2,216두